

헌법적 관점의 기록학

Archival Science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이영남(Lee, Youngnam)*

1. 서론
2. 헌법적 관점의 이해
 - 1) 헌법적 관점의 정의
 - 2) 헌법적 관점의 사회적 배경
 - 3) 기록인식의 전환
3. 인간의 기본권과 기록실천
 - 1)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
 - 2) 인간의 기본권의 의미와 주요 내용
 - 3)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
4. 새로운 기록규칙
 - 1) 기록관리 규칙과 새로운 기록규칙
 - 2) 기록규칙의 반복적 실행
5. 결론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부교수(durtkrk@gmail.com).

■ 투고일: 2023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1월 17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1월 23일.

■ 기록학연구 79, 121-168,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79.121>

〈초록〉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초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주제어 : 헌법, 규범, 인간의 기본권, 인권, 기록관리, 기록활동, 기록실
천, 구술, 기록관리 시설, 탈시설, 행복, 자유, 평등, 규칙, 사건,
현장, 실무자, 담론, 기록담론**

〈Abstract〉

Record & archives management is at the heart of archival science. We must be faithful to record & archives management. However, isn't there a paradox that arises the more faithful we are to record & archives management? The paradox is that 'being a responsible manager and efficiently managing records' is rather reduces the interest in the social existence of humans who create and use such records. Why do humans produce and use records? It may be because human beings have been living with the concept of records. The concept is 'the same as the design of thoughts'. There is no need to doubt this direction because as record & archives management develops, more valuable records are preserved more systematically, and they are been served with wider scope and appropriateness. However, if we observe this situation from a human point of view rather than record & archives management, we find that humans appearing in record & archives management are limited to the object of using records. If humans are perceived differently based on the hypothesis of reviewing from the ground up, we can encounter a unique contex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ecords or between records and humans. If it reaches the norm that human beings have dignity that cannot be transferred to anyone,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must live by enjoying freedom, equality, and social basic rights, in short, if human beings are recognized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we

can newly recognize the social role and direction of records.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document basic human rights as the final norm and clarify that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and practice them. The social role of records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s the practice of records that proliferate basic human rights. The practice of archiving, which multiplies basic human rights, may also be a civic consciousness required of experts, but on the other hand, it can be a professional way for archival studies. If record management is a two-lane round trip,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record management and record practice, which multiplies basic human rights, is a pioneering four-lane round trip.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e of archiving, which has been developed in and out of record & archives management, by clearly grasping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val studies, and examines the social role of archival studies in this context. The social role of archival studies is to provide new linguistic rules for archiving.

Keywords : constitution, norms, basic human rights, human rights, record management, archives management, archival activities, oral, archival facilities, de-institutions, happiness, freedom, equality, rules, events, field, practitioner, practice, discourse, archival discourse

1. 서론

기록학은 현장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학문이다. 어딘가에서는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와 사정으로 기록에 손을 댔다. 기록작업의 성격과 전개양상은 기록현장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기록학은 공공기록관리제도상의 기록현장인 기록관리기관(공공아카

이브, 공공기록관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등장한 푸른 하늘처럼 기록관리 시설 바깥에서, 다양한 기록현장이 생겼다. 서술을 이어가려면 기록현장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겠다. 기록관리 시설을 기준으로 삼아 기록현장을 분류해본다. 기록현장은 다양하다. 그렇긴 하나 단순하게 본다면, 기록현장은 시설의 ‘안과 바깥, 그리고 경계’에 포진해 있다. 그곳을 기록현장으로 이름 붙이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모두 기록하는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기록하는 일이라는 공통적 기반에서도 개별적 양상은 각각 ‘기록관리, 기록활동, 탈시설적 기록실천’으로 전개된다.

‘기록활동’은 기록관리 시설 바깥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기록작업의 통칭이다. 새로운 계열의 기록실천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수렴되는 말로 기록활동이 적당하다고 본다. 여기서 바깥이란 마을/지역/단체(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있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개인/가족/일상/사회적 사건(예. 4·16 사건) 등을 의미한다. 이곳은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기록현장이다. 2008년 무렵 마을 아카이브가 등장하면서 바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기록학을 직업적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 사회적 사건의 당사자들, 시민단체의 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신도 왜 그런지 모른 채 기록활동에 매료된 사람들이 기록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말해주는 것은 기록인구의 다양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류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이라는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활동은 다양성이 교차하는 곳에서 자랐다.

기록활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인간의 삶에 던지는 시선이 있다. 둘째, 기록은 생활의 개선, 진실의 촉구, 정의의 실현, 인간관계의 통로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기록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인간이 행동하거나 말할 때 따르게 되는 기준을 말한다. 규범의 기록은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이야기 작업으로 전개가 된다. 이

야기 작업은 구술, 쓰기, 사진, 영상 등의 구체적 기록기술(technology)을 통해 실현된다. 넷째, 담론의 양상을 띠고 있다. 담론은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기록활동이 전개되면서 기록의 모습도 달라져 기록은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말해야 할 무언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기록을 언어로 사용해서 말한다.

기록활동은 기록관리의 재현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록활동은 기록관리의 앵글로 담기에는 너무 큰 피사체이다. 조직이나 단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록이나 그와 별도로 존재하는 기록을 관리하는 일을 기록관리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의 재현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진 기록활동이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다고는 해도 기록활동과 기록관리가 완전히 별개의 기록 상황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서로 겹치는 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중첩의 지점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현상은 '탈시설적 기록실천'이다.

탈시설적 기록실천은, 시설을 기록작업의 유일한 출처나 기원, 또는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로 삼지 않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다. 시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록학에서 기록관리 시설은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곳, 국가와 시민이 법률로 약속해 만나는 곳,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록업무가 진행되는 곳이다. 기록관리 시설은 가치 있는 사회적 자산이다. 시민들이 각자의 필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기록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도 기록관리 시설은 중요한 직업적 기반이 되는 곳이다. 다만, 시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록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시설만을 유일한 현장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탈시설적 기록실천이다. '시설의 한계'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기도 할 것이다.

탈시설적 기록실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관리를 추구한다. 여기에는 절제된 적극성이 있

다.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법령에 구애받음 없이’와 대비된다. 기록관리는 전자에 가깝고 기록활동은 후자에 가까울 편이다. 둘째, 기록관리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만나 일할 때 기록관리를 주어진 것(the given)으로 삼는다. 그래서 발걸음이 신중하다. 셋째, 인간의 삶에 시선을 던지면서도 이것이 과연 기록학적 시선일 수 있을까 하는 직업적 고민을 한다. 인간에게 시선을 돌려 학문적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인류학이나 심리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직업적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것은 결국 인간을 직시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을 하면서도 이런 시선이 기록학의 범위 안에서 통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넷째, 시설 바깥에서 진행되는 기록활동에 호응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시민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려는 의지는 ‘~~아카이빙’으로 표현된다.

정의와 성격, 특징을 약속하며 기록활동, 탈시설적 기록실천, 그리고 기록관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했다. 모두 기록학의 모습이다. 각자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상이한 기술과 관행도 형성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 선가 모두 기록하는 일이라는 공통감각으로 전개되고 있다.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록현장을 개척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록의 익명적 네트워크’가 출현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기초에서 보면, 기록현장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면서 기록학의 모습을 확대해서 그리는 것이 필요해진다. 또는 다양한 기록현장에 적용될 공통기반이 필요해진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 싶은 공통기반은 헌법적 관점이다.

2장에서는 헌법적 관점의 정의, 사회적 배경, 필요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헌법과 인권규범에 등장하는 인간에 주목하는 것인데, 이때의 인간은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헌법적 질서에서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일이다. 사회적 배경의 요지는 관계성이 취약한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이다. 기록 인식(기록을 매개로 인간과 사회를 인식하는 것, 또는 인간과 사회의 맥락에서 기록을 인식하는 것)의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것은 기록학 형성기에 부재했던 인간에 대한 관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3장에서는 헌법을 열어 헌법 2장에 조항으로 들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읽는다. 기록학은 물론 헌법을 책임지는 학문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학의 사회적 전개를 위해서는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는 헌법을 읽을 필요가 있다. 헌법읽기는 기록학의 학문적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상기할 것이 있다. 그것은 기록관리가 사실은 읽기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예: 평가, 기술, 열람 등). 헌법읽기를 통해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새로운 기록규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규칙이란 무엇인가, 기록학에 규칙이 필요한가, 현재 기록관리에는 어떤 규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와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기록규칙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록이 담론으로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어적 규칙이 필요하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규칙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록관리 법률체계에서 기록관리를 이해했다. 1999년에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것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에 한 챕터로 들어 있던 문서관리가 독자적 법률로 독립한 측면이 있다. 사무관리규정은 1962년에 제정되어 1990년대까지 정부 내 문서관리의 기준이었다. 사무관리규정은 모범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에 관한 것이었다. 사무관리규정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들어 있지 않다. 철저히 관리론의 시각이지 관계론의 시각은 없었다. 그러나 공공기록관리법이 제정되고 ‘문서관리가 기록관리로’ 전환

된 후, 기록관리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로 성격이 바뀌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록관리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지방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현실의 변화는 이런 기록관리체계가 감당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법률/조례보다 상위 규범이자 최종 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기록학을 갱신해나갈 필요가 있다.

2. 헌법적 관점의 이해

1) 헌법적 관점의 정의

현행 헌법은 역사적 구성물이다. 17~18세기 유럽에서는 새로운 국가 권력이 태동되기 시작한다. 이때 입헌주의가 등장해 군주도 예외 없이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가 형성된다. 그리고 각자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르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된다. 주권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다른 흐름도 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은 근대 최초의 인권문서로 평가를 받는데, 그 후 세계 곳곳의 인권문서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평등하다, 자유롭다, 독립적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를 기반으로, 인간은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생명을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새로운 창세기’에서 다시 태어났다. 인간/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변화가 왔다. 개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진 존재인데 비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간/개인의 기본권을 증식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다. 개인은 외부의 어떠한 폭력적 힘에 대해 맞설 수 있는 정당성

을 갖는데, 그 원천은 개인의 존엄성이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이 흐름에 속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헌법에 구체적인 조항으로 서술하여, 이를 국가의 의무로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김두식 2011, 김영란 2020, 차병직 외 2016, 청와대 2018, 한인섭 2019).

통상적으로 쓰이는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권’은 그런 인권을 국가제도로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을 말한다. 헌법에 명문화한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국가제도로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 인권이 보장되기 힘들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권 대신 인간의 기본권을 기본 개념으로 사용한다.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의 범위에서 말한다면,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식하는 일에서 현재형으로 재현된다.

이 글에서 인간은 자명한 존재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 나-우리는 인간이다 →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산다: 인간은 인간이다. 다른 설명은 불필요하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규정하기 위해 인간 밖으로 나가서 설명을 시도하거나, 다른 부차적인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나는 나다’라는 하는 명제처럼 인간은 단지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 따라서 나는 인간이지만 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는 인간으로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인간다운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차별적 인식은 불가능하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듯이 원리상 인간과 차별은 공존할 수 없다. 한편, 인간은 생명체이기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산다. 인간은 ‘삶’이라는 무대에서 다른 인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마침내 죽는다. 물론 그 사람의 이름은 신체적 죽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고, 이런 역할은 전통적으로 기록

이 해왔다. 헌법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제공되는 대본이다. 인간은 삶의 무대에서 헌법의 정서와 대사로 활개 치며 살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국가의 사무이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이해하는 논점 중의 하나는 헌법을 삶의 전반에 작용하는 규범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규범이다.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생활 영역을 규율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의하여 실현되는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면서 모든 규범의 기본이다.”(차병직 외 2016, 503쪽). 헌법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기본질서를 제공하는 최고의 법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거이자 뿌리이다. 그리고 한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공문서들 중에서 최고 권위의 공문서이다. 헌법이 역사의 무대에 오른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미국 1787년, 프랑스 1791년). 동아시아에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기에 등장했다(일본 1889년, 중국 1908년, 한국 1919년). 근대국가가 형성되던 역사적 시기에 헌법이 등장한 것이다. 결국 근대국가는 기본적으로 주권의 출처를 군주에서 시민으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면서 형성되었다. 헌법은 이런 주권혁명의 제도적 기반이다. 헌법이 말해주는 것은 국가권력에 관한 것은 주권자에 바탕을 둘 때 정당하다는 점이다. 헌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 국가의 인격적 담당자인 공무원은, 개인이든 팀이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적 관점에 서야 한다(김두식 2011, 김영란 2020, 차병직 외 2016, 청와대 2018, 한인섭 2019). 헌법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에서 줄인다. 이 글은 헌법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일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관점은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사유할 때,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이다. 관점은 어떤 대상을 사실과 해석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그 대상의 의미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존재의 의미와 이름이 달라진다(에드워드 H. 카 2015, 케이스 젠킨스 1999). 이 글에서 헌법적 관점은, 기록을 관찰하고 인식하며 이미지를 형성할 때,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 기록과 기록자가 관계를 형성할 때, 나아가 기록작업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기록에 대해 말하고 행동해야 할 때 헌법을 근거로 삼는 태도이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기본권과 이것의 역사적, 실천적 배경인 국내외 인권규범이 근거가 된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은 규범에 관한 것이다. 규범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말할 때 따르게 되는 기준이다. 개개인의 규범은 윤리적 실천(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가)에서 형성되고 갱신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해주는 관계성이다. 자기와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 관계에서 윤리적 고민은 심화된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은 새로운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자식의 출현으로 그는 비로소 아버지가 된다. 그는 이제 ‘아버지로 사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사건이 다가온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삶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 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자식의 삶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그가 아버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매순간은 결국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인 나도, 그리고 자식도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개인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첫째, 인류의 보편적 도덕관념, 둘째, 그가 속한 시대에서 요구되는 규범(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헌법적 규범), 셋째, 살면서 형성하고 갱신하는 윤리적 감각에 의지하게 된다. 이 셋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섞여서 그 사람의 평소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형성된다

(피터 싱어 2013, 2023).

기록하는 일에도 윤리적 감각이 요구된다. 이것이 전면화 되는 것은, 시설 바깥에서 전개되는 기록활동과 경계를 오가는 탈시설적 기록실천에서이다. 여기서 기록하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PD가 하는 일은 매일 발생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기록활동과 탈시설적 기록실천이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기록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기록활동, 탈시설적 기록실천의 요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들어가 함께 삶을 고민하면서 기록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록이 삶을 이끌어가는 규범임을 직감하게 된다. 기록관리는 ‘기록을 통제하는 관리영역’으로 정의된다. 기록을 관리해야 할 대상(사물)로만 여길 경우에는, 인간이 직면하는 윤리적 상황이 기록관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업무논리상 후순위로 밀린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 한국의 기록관리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기록관리 시설에서도 아키비스트 윤리강령 같은 직업윤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록관리에도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는 점, 직업적 윤리도 인간이 직면하는 윤리적 상황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기록을 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록활동, 탈시설 기록실천, 기록관리의 공통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다.

물론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떤 하나의 단일한 관점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므로 다양성과 자유, 평등을 요구하는 민주주의 감각과는 배치된다. 민주주의에서 필요로 하는 관점은 다양성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김정인 2015, 2017). 기록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록에 대한, 그리고 인간과 세상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기록학을 만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양성이 교차하는 곳에 헌법적 관점을 제출하는 것,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학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토양에서 기록

학을 경작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적 관점 아래에 있는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헌법적 관점의 심층을 살피는 것인데, 헌법적 관점이 돌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다. 토양에는 표토와 심토가 있다. 표토(表土)는 미생물과 벌레가 풍부하고 분해된 유기물이 많은 곳으로 농사를 짓는 작물은 대부분 표토에서 자란다. 그래서 표토는 작토(作土)나 경토(耕土)로도 불린다. 표토는 농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토양이다. 심토(心土)는 그 아래에 있는 토양이다. 심토는 지하수의 상승과 통기가 일어나는 곳이다. 식물은 심토까지 뿌리를 깊게 내려 몸을 지탱한다.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을 심토에서 흡수한다. 심토가 있어 숲이 형성될 수 있다. 헌법적 관점을 형성하는 심층에는 ‘역사적 관점’이 있다.

역사적 관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역사적 관점은 존재를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그런 맥락에서 인간-사회와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이다. 물론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발전과 성장으로 변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불연속적 단절을 강조하며 ‘역사는 진보한다’는 관념에 근본적 이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런 거대한 논쟁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변화가 무엇인지는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건 역사적 관점에는, 만물이 유기체적 존재로서 변화한다는 감각이 들어 있다. 둘째, 역사적 관점은 역사에서 이론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이 경우 역사는 이론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론을 구성하는 원천이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도 한다. 물론 상식적이며 정당한 인식이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다른 접근이다. 역사의 필요를 이론적 탐구에 필요한 것들을 역사에서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서 찾기 때문이다. 셋째, 역사는 언어적 존재, 또는 담론이 된다. 역사적 관점을 취하고 역사를 말함

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아닌가. 숙명처럼 굳어져 버려 도저히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사회적 현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특이한 역사적 자각에서 올 수 있다(차성환 1990. 미셸 푸코 2000. 프레데릭 그로 2022. 홍기빈 2023).

헌법적 토양에서 기록학을 해본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학을 해본다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 역사적으로 전개된 경험적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학에 필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둘째, 기록을 언어적 현상으로 다룬다. 기록은 일의 과정과 결과가 들어 있는 사물이고 이와 관련한 인간의 행동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언어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기록한다, 기록해둔다, 기록할 가치가 있다’ 등의 용례를 사용한다. 기록의 언어적 현상은 집단적 흐름으로 읽힌다. ‘기록의 익명적 네트워크’에서 기록은 말해야 할 무언가로 돌아다니고 있다. 셋째, 기록을 담론으로 다룬다. 이것은 기록이 언어적 현상으로 출현했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논의이다. 담론이 전개되려면 규칙이 필요하다. 중구난방은 아니기 때문이다. 담론은 나름의 체계를 잡아가며 전개된다(미셸 푸코 2020. 프레데릭 그로 2022). 기록을 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규칙의 시선으로 기록을 보는 것이다.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함께 지키기로 정한 사항이나 법칙, 또는 질서이다. 담론에서 규칙은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기록학은 기록을 다루는 학문이다. 하나의 분과학문은 그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적용될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학의 과제에는 사람들이 기록하는 일을 할 때와 기록에 대해 말할 때 필요로 하는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2) 헌법적 관점의 사회적 배경

헌법적 관점의 사회적 배경에는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개선의지가 있다. 관계성이 취약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기록학은 이것을 왜 문제로 삼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행복한 삶에 관한 것이고, 행복한 삶의 기반은 관계성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서는 것이 있다.’ 현행 헌법 2장에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서 핵심은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은 그럴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행복은 주관적 만족감일 수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는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기록학도 행복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러자면 (인도주의나 인문학적 성찰 등의 보편적 시선이 아닌, 현재적이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헌법적 관점에서 서야 한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에서 논의를 시작해본다.

일반적으로 행복은 잘 살고 있다는 지속적인 느낌, 불행과 궁극적으로 죽음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의 힘에 맞서는 행동을 말한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쁨을 향유하는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장기지속 상태에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부당한 운명에 끌려 다니는 희생물이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찾고 가꾸어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처해 있든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다. 행복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특성이고, 생활세계에서 잘 지내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품이다(리즈 호가드 2006).

행복은 주관적 만족감이지만, 행복에 관한 것은 측정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

다.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주관적인 인지 및 평가로 행복을 측정해서 정책 권고를 하는 곳이 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DSN)는 2012년부터 전 세계 156개국의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World Happiness Report, 이하 WHR). 인류가 공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목표를 행복에 두자는 취지이며 국가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행복지수 항목으로는, 정서(affe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자유(freedom), 부정부패(corruption), 관용(generosity), 1인당 국민소득(GNP), 건강 기대수명(health life expectation)이 있다. 한국은 2019년 현재 각 행복지수별 순위에서 정서(101위), 사회적 지원(91위), 부정부패(100위), 관용(40위), 1인당 국민소득(27위), 건강 기대수명(9위)을 각각 차지했다. 이를 종합한 전체 순위는 54위였다(2019 WHR).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15년(47위), 2016년(58위), 2017년(56위), 2018년(57위), 2019년(54위), 2020년(61위), 2021년(62위), 2022년(59위), 2023년(57위)로 의미 있는 변동은 없었다.

총 6개의 행복지수 중에서 ‘정서,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 등 4개는 관계성(공동체성) 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정서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성향이다. 사회적 지원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다. 자유는 개인이 삶의 제반 영역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직업세계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하며 사는가, 자기 특유의 개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관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과 포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관계성 지수가 경제지수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적 풍요와 개인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이 매우 취약한 사회이다. 무언가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한국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거나 끊어지는 삶

을 살고 있다. 행복조사는 국가별 행복 불평등 지수도 제시하는데, 한국의 행복격차는 47위이다. 한국 사회는 개개인의 행복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삶의 질’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제기구 및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삶의 질, 행복, 더 나은 삶’ 등인데, 이 용어는 맥락상 같은 의미이다.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개발하여 11개 지수로 구분해서 조사, 분석, 발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은 40개 회원국 중에서 30위를 차지했다. 2020년(28위), 2023년(32위)를 차지했다. 유엔 행복도 지수와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행복은 낮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 발표에 따르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2.11.), 정부는 2023년까지 OECD 평균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 ‘포용적 사회체계구축’(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을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감의 복원과 유지는 물론 전통적인 인적 유대로만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좋은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 포용적 사회체계구축 같은 정책을 세밀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가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는다. 유엔행복도 조사는 2023년 현재 10년이 경과했다. 한 국회보고서는 10년을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가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불변의 사실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행복을 언어적 수사로 가볍게 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행복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위한 국가제도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국가로 변신해,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권/평등/정의의 일상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국회미래연구원 2023.5.8.). 한국 사회는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이다. 국

회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하다. 정부는 관계성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에 속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의 첫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2장 10조)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헌법이라는 최고 규범과 이를 정책으로 시행하는 국가가 마지막 희망이다. 국가의 정책은 통계상의 사실을 기반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2014년에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쓸쓸한 문장을 제시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1,717명이 고독 속에서 죽었고, 2014년 현재 4,710,000명이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국내 최초로 고독사 통계를 잡았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다른 경제적, 사회적 통계 역시 행복한 삶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긴 하나 이런 사회적 위기가 과연 기록학과 직접적 관련이 있을까. 불행한 삶을 제시하는 통계가 있는 곳으로 기록관리기관도 가야 할까. 그곳에 간다고 한들 기록하는 일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현재 기록관리의 인식틀로만 본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기는 하나 기록관리와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합리성의 장이 제공하는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기록관리의 인식틀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생각해볼 것이 있다. 1999년 이후 현재의 기록학이 형성되던 시기는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가 심화되던 시기이다. 기록과 인간의 행복은 동시대적인 상황이다. 그런데도 기록관리는 인간을 생략한 채 뛰어난 것은 아닌가. 1997년 IMF 이후 격화되었을 이런 사회적 빈곤이 거리 곳곳에 있는데도, 기록학은 이를 기록관리와 상관이 없다며 외면

한 채 지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록학의 형성기에 헌법적 관점을 부재했었기 때문이다(또는 인간의 관점이 부재했었다). 기록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은 새롭게 출현한 기록상황을 기존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필요해진다. 역사적 관점에 서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학도 ‘기록학은 왜 기록관리가 전부가 아닌가’에 대해 가설을 제기하고 검토할 수 있다.

3) 기록인식의 전환

기록활동과 탈시설적 기록실천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박토인 땅도 한동안 내버려두면 다양한 잡초가 자라면서 비옥해진다. 내버려둔 땅에서 잡초가 자라고 미생물이 생겨 농사를 지을 정도의 토양이 생기면, 농부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잡초의 짧은 역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 양천구 기록관의 사례는 인상적인 시사점을 준다. 양천구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인 ‘나비남 프로젝트’(2017년)를 시행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지역의 50대 독거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2022년 보건복지부), 2021년 현재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이었다. 고독사는 최근 5년(2017~2022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50~60대 남성의 비율이 50%를 차지한다. 50대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양천구의 나비남 프로젝트는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되었다. 양천구 기록관은 나비남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인간의 고독과 기록을 연결해 행복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필자는 양천구 기록관의 마을기록활동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2022년). ‘시민아카이빙’을 담당하는 기록연구사로부터 프로젝트의 과정과 의미를 들을 수 있었다. 양천구 기록관

에는 두 명의 기록관리직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시민아카이빙’을 전담하고 있다. 양천구 기록관은 관내 청소년 문제에 관여하는 기록실천도 수행했다. 양천구 기록관의 사례는 기록관리직이 시설 밖에서 시선을 돌린 경우가 될 것이다. 물론 양천구 기록관 사례 말고도 몇 개의 다른 기록관 사례도 있지만 여기선 생략한다(손동유 2020; 2021, 신유림 2019, 이도순 2023).

기록학이 태동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공공기록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기록학의 문제의식이었다. 당시에는 정부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호소력이 있었다. 기록이 없으면 (올바른) 역사도 없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할 수 있는) 정부도 없기 때문이다. 정보가 강조되는 사회 흐름을 타고 기록의 정보적 가치에 대한 호소도 있었다. 참여정부 당시(2003년~2008년) 기록혁신에 대한 문제의식은 간결하게 ‘기록이 없는 나라’였다. 그 간의 노력으로 공공기록 관리는 많이 진척되었다.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기록의 수량은 확실히 급증했고 이를 담당하는 기록관리 전문인력, 시스템도 많이 정비되었다. 아카이브 건물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아카이브 건물은 모던해졌다.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미학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괜찮은 기록물이 다수 있고, 시설과 장비, 기술이 개선되고, 문화적 능력도 세련되어져서, 시민에게 세련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서울기록원 등 대표적인 공공아카이브에 전문직 원장이 임명되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기록관리직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전문직종이 될 수 있다.

이런 연대기적 흐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유보한다. 그러나 상기할 것이 하나 있다. 현재의 기록관리는 기록을 대하는 하나의 인식으로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점이다.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사회의 필요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기록관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인

식체계로 변할 수 있다. 작은 균열에 현미경을 대본다. 서울시 양천구 기록관의 시민아카이빙이나 후술할 4·16 아카이빙에서 그런 균열의 일단을 보게 된다. 아카이빙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록행동도 아카이빙의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록관리의 확산인가, 아니면 오히려 기록관리의 균열의 지점을 향해 진군하는 위협한 공세인가. 공세라는 말을 굳이 쓰는 것은 기록관리에 대해 새로운 기록인식과 실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2014년에 4·16 참사가 터졌을 때 많은 시민들이 유가족과 연대하고 협력했다. 기록학도 여기에 합류했었다. 4·16 사건은 새로운 기록현장이 되었다. 그런데 4·16 기록실천을 하는 사람들은(여기선 기록학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로 한정함) 자신이 하는 일을 단지 기록관리상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 인간의 존엄과 행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 역할에 대한 의문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한편으로는 기록관리 시설이며 그 안에는 기록관리팀이 있어서 기록관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4·16 기억저장소는 탈시설적 기록실천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아카이브의 상징적 존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김신석 2017, 이경래 2022, 정지연 2023, 조민지 외 2022). 서울시 양천구 기록관의 기록실천, 4·16기억저장소의 기록실천의 심층에는 사회적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사람들의 집단적 노력이 있다.

탈시설적 기록실천의 두 사례를 제시하면서 인식전환의 단초를 살펴 보았다. 기록활동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서술하지 못했는데, 이는 4장에서 다룬다. 탈시설적 기록실천에 비해 확실히 압도적이고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록활동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 요컨대, 탈시설적 기록실천과 기록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기록학도 사회의 영향을 받는 유기체이다.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록학은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적 상황을 대면하며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기록학적 시선을 던져야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학을 논의하는 것은 관계론을 기록학으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인간의 기본권과 기록실천

1)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

새로운 기록실천(기록활동과 탈시설적 기록실천)은 색다른 메시지를 제공해준다. 그것은 기록이란 무엇인가보다는,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게 기록은 설명책임성의 증거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가. 인간에게는 기록이 무엇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당신은 아카이브 이용자이니 이용자 경험으로서 기록에 대해 말해달라는 업무상의 진술로 좁힐 필요는 없다. 새로운 기록실천은 다르게 묻고 있다. 사람들은 기록을 언제 필요로 하는가, 기록의 개입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발전에 대해 말해본다. 기록학이 기록관리의 발전에 대해서만 주목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전면적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존재에 내재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증폭되고 증식되는 육체적·감정적·정신적 가능성을 극대화 하는, 자유로서의 발전'에 대해서도(홍기빈 2011, 아마트라 센 2001)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기록학은 인간의 자유를 발전시키는 일에 관여할 수 있다. 새로

은 기록실천에서 발신되는 메시지는 새로운 질문을 검토하라고 한다.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록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에 대해, 또는 ‘기록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삶에 새로운 인식과 관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 인간을 만나는 일에서 비로소 개시되는 기록(기), 인간을 관찰하며 관계를 맺으려는 열망(승), 인간다운 삶을 정비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전), 그리고 이야기 작업의 전개(결). 이런 것들이 기승전결을 구성하며 기록하는 일이 되었다. 기록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정서와 언어도 달라지고 있다. 접촉, 대면(비대면), 겪음, 만남, 사랑, 기억, 경험, 참사, 사건, 고통, 상처, 치료, 장애, 고독, 고립, 가난, 질병, 죽음, 애도, 공감, 연민, 우애, 정동, 돌봄, 감정, 정서, 관계, 인생, 대화, 이야기, 서사, 지역, 생태, 공동체, 실천, (...), 같은 말이 기록하는 일에서 필요해졌다. 기록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실천하는 경우, 그리고 기록학적 의미와 방향을 점검해 기록학의 일부로 삼으려는 연구성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실천사례와 연구논문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에 한정한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다 뭘까? 그 하나 하나는 물론 인류의 오랜 삶과 역사를 응축하고 있다. 그런데 직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말들을 쓰는 분야가 있다. 예컨대, 의료, 보건, 심리, 복지, 교육, 장애, 젠더, 지역, 인권 등의 분야를 들 수 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직업 수행상의 언어이다. 반면 공공아카이브의 기록관리 재현에서는 쓰기 힘든 말이다. 이런 언어는 기록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관리영역인 기록관리와는 다른 계열로부터 와서, 기록학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열이 바뀌고 있다. 계열이 바뀌면 피는 꽃들도 바뀐다. 이제 기록하는 일의 일부는 이런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개되기 어려워졌다. 인간을 출처로 하는 말들과 이 말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말을 한다.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다. 복잡할 수 있는 일상생활과 달리, 정제된 드라마 속 배우의 대사는 이런 인간 언어의 특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말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구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이런 말들이 함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권>에 관한 요구이다(헌법 2장). 헌법 2장은 헌법의 필요, 국가의 이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명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록하는 일에 인간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말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기록학이 이미 헌법 2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다. 기록학에서 다룰 인간은 어떤 개념의 인간인가. 기록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단체/기증자, 또는 이용자/방문객 등에 관한 분석이다. 그러나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헌법 2장의 등장인물들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국가는 조연이다.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이라고 할 때, 이때의 주연은 헌법 2장의 등장인물들이다. 이들은 헌법적 질서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살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이런 개념적 접근이 기록관리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논의를 기록관리와 연결시켜본다. 기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은 각자의 인격, 전문적 능력과는 별개로, '법률적 인간'이다.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인간이란 법률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법률의 토대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존재라는 의미이다. 법률적 인간은 '법률이 생산한 인간'이다. 기록전문직은 법률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기에 기록관리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다. 이것은 개개인의 전문적 능력과는 별개의 법률사항이다. 기록관리기관은 자신의 존속을 위해 법률적 인간을 요구한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야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헌법은 모든 법을 모으는 언덕 위의 깃발이다.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 요컨대, 기록학은 결국 헌법적 질서의 인간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에 대해 말할 때 철학적 인간, 종교적 인간, 인문학적 함축이 들어 있는 보편적 인간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의 무대에 올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헌법적 질서의 인간을 다루는 것이다. 정치적,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현행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헌법이라는 공문서에서 걸어 나와 기록의 무대에 등장한 인간’이 주위를 둘러보며 기록학적 설명을 요구하는 장면하는 장면을 상상해볼 필요가 있겠다.

헌법적 인간은 현행 헌법을 근거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삶의 조건을 개선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예: 헌법소원). 또는 국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해야 하는 개인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10조에는 국가의 의무가 함께 들어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현행 헌법 2장 10조). 이 문장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선언한 문장 바로 다음에 온다.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므로, 인간의 기본권에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의무에 관한 것이다. 국가는 제도와 정책으로, 인력과 예산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은 헌법적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 전개상의 논리로 본다면, 기록활동이 발단이 되었고, 탈시설 기록실천이 호응했고, 최근에는 공공아카이브의 기록관리도 움직이고 있다. 헌법과 인권규범은 이런 갈래들의 공통기반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기본권의 의미와 주요 내용

인간의 기본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으로 들어 있다. 헌법의 적용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그가 누구든, 어떤 상태이든, 자격이나 사회생활 능력 등의 여부를 놓고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은 존재하는 그곳에서 존재하는 그 방식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 읽기에서 주의할 것은 뼈대를 찾아 읽는 것이다. 헌법 읽기의 뼈대는 인간이다(특히 헌법 2장: 인간의 기본권). 뼈대를 보호하는 근육과 살은 시민들 상호간의 노력, 국가의 의무와 책임일 것이다. 현행 헌법은 1조 1항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름을 먼저 제시하고 이 국가가 민주공화국임을 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독일 헌법 제 1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근대국가들의 헌법은 기본적으로 18세기에 형성된 인권선언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도 이런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을 뼈대로 삼고 있다. 그러나 순서상의 배치로 인해 마치 국가가 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위해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육안으로는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인간/개인을 위해 존재한다. 이 글이 헌법을 읽는 데에 있어 좌우지간 2장부터 읽고, 2장에서 종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한국 헌법의 배치상의 순서로 인해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국가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으로 헌법을 읽어야 한다. 2장을 먼저 읽으며 목적을 잡고, 나머지는 2장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무튼 헌법 2장을 읽는다. 다만, 개요를 정리하는 데에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정안(이하 2018년 헌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현행 헌법은 1987년에 제정되어 그 후 30여 년의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2018년 헌법개정안은 1987년 이후 30년의 사회변화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했던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해 보면, 첫째 기본권의 주체가 확대되었다(국민 → 사람). 둘째, 자유권, 평등권이 강화되었다. 셋째, 생명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이 신설되었다. 헌법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의 확대는 필요했다. 2018년 헌법개정안은 그 논의과정과 결과가 모두 대통령기록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요지가 출판되었으니 출판된 책으로 개요를 정리한다.

〈표 1〉 인간의 기본권 개요

항목	핵심 내용
존엄성	모든 기본권의 대원칙 - 주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자연권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고 생명을 온전히 보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 인간 존엄의 본질에 해당
자유권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 - 개인은 자유인, 자유는 개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
사회권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국가는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하게 된다.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

* 개요를 정리하고 설명을 보완하는 데에 필요했던 책: 차병직 외 2016, 청와대 2018.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기본권의 대원칙이다. 기본권은 여기에서 출발해 여기로 귀결된다. 신에게 신성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존엄성이 있다. 존엄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존엄하다는 근본적 사실이 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행복추구권).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실질적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모든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실현의 수단이다.

모든 존재는 개별성을 지닌 존재이다.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개성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국가가 다양한 기관으로 운영이 되듯이, 자유인인 개인도 자유롭게 살기 위해 삶의 전반에서 다양한 자유가 필요하다. 신체/양심/거주·이전/비밀·사생활/자기통제통신/표현/알권리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직업/주거/집회·결사의 자유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는 평등에서 온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면 개인의 자유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따라서 평등에 관한 것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 삶의 전반에서 평등함을 요구하는 것은 온전히 자유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다. 예를 들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지역, 신분에서 야기되는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평등은 인격상의 평등을 말한다.

사회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도 불린다. 기록학의 제도적 실행을 위해서는 특히 사회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권은 교육/노동(일)/사회보장/임신·출산·양육/주거/건강/안전/혼인·가족생활 등의 기본권으로 구성된다. 이를 담당하는 사회제도로는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의료제도, 가족제도 등이 있다. 살다보면 가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재해재난, 고립 등으로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재분배의 문제는 경제적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의 차원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간의 기본권에 살펴보았다. 인간의 기본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것이다.

3)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

(1) 헌법적 질서의 기록실천

국가로부터 시선을 돌려 인간으로 얼굴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이때의 인간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유한 존재이다. 인간의 삶에 던지는 기록학적 시선으로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이런 기록실천은 기록을 규범으로 대할 때 잘 이해가 된다. 기록관리는 사물에 대한 관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규범의 영역이기도 하다. 규범의 영역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것이다. 규범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두절미 낫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미 기록관리조차도 헌법적 질서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사례를 살펴본다.

첫째, 기록관리 시설 안에서 전개되는 기록실천을 들 수 있다. 헌법적 질서에 따른 것으로 의식하지 않았다 해도 기록관리의 시설 운영에는 헌법적 질서가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운영(예_휠체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시설)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아카이브만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아카이브 이용을 위한 장치와 기술은 기록관리 시설의 일부가 되었다. 기록관리의 재현도 이미 헌법적 질서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질서는 시설 안에서 필요한 열람상의 편의, 전시상의 편의로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일하는 기록관리직이 휠체어를 타고 전시장을 둘러보는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아마도 그는 무척이나 목이 아플 것이다.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공아카

이브에서 호평을 전시들은 누구의 시선에 맞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서서 걷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구성된 것이 현재의 전시는 아닐까 한다. 어쩌서 건물을 들어올 때는 헌법적 질서인데, 정작 들어와 전시를 보려고 할 때는 헌법적 질서가 무력화 되는가. 헌법적 질서의 기록실천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기록관리 시설은 오히려 헌법적 질서를 감금하는 곳이 될 수 있다.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으로 '이동권'이나 '외출'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동권보다는 외출로 서술해 본다. 외출은 한 인간의 실질적 자유에 관한 것이다. 외출은 이동권의 다른 개념이고 정치적 개념, 헌법적 질서의 상징적 표현이다. 단지 바람을 쐬고 거리를 걷고 공원을 걷는 것만이 아니다. 외출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처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밤길을 걸으며 불 일도 보고 산책도 할 수 있는 밤의 자유는 외출에서 실현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록관리 시설은 인간의 이동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동권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 기록관리 시설이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둔 설계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하는 일을 이해하려면, 기록관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헌법적 질서를 새로운 개념으로 갱신하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둘째, 탈시설적 기록실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다. 인간은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권을 가지고 있다. 장애,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고립, 재해 재난, 주거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보건의료제도 등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천구 기록관 프로젝트는 헌법적 질서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 프로젝트는 기관 내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 행정상의 협업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행정 안에 헌법적

질서를 가두는 것이다. 헌법으로 얼굴을 돌려야 한다. 양천구 기록관은 헌법적 질서에서 전개되는 정책에 협업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4·16 아카이빙도 헌법적 질서에 따른 것이다. 4·16 참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부인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파괴되었던 사건이다. 사건 후에 전개된 국가권력의 모습은 더 심각했다. 이에 반해, 시민들의 단결된 행동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 기록관리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합류하여 행동했다. 시민들 상호간의 의무에 속하는 일에 관여했던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헌법은 국가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우기는 하지만, 심층에는 시민 상호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4·16 사건의 전개와 이의 일부인 4·16 아카이빙은 말해준다.

기록활동과 탈시설적 기록실천에서 읽을 수 있는 기록방법론은 협업(또는 연대와 협력)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단독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 상호간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해졌고, 다른 전문분야와 협업해야 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2) 협업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의 방법론으로 협업이 필요하다. 기록하는 일을 관리론의 시각만이 아니라, 관계론의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 기록하는 일에서 관계론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을 때 기록도 있다는 것, 기록은 이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들어가 비로소 의미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기록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타 직업군과 협업으로 할 때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효과적일 수 있다. 시민들 상호간의 자발적 연대가 기본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기록학이라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분

야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인간의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는 직업군에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의료, 간호, 보건, 심리, 복지, 교육, 장애, 젠더, 지역, 인권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업군을 말한다. 이들은 돌봄 계열에 속하는 전문직 종사자, 인권활동가, 임상가 등이다. 이들은 ‘하이터치 전문직’(high touch profession), ‘돌봄 전문직’(caring profession), 또는 ‘실무자/활동가(Practitioner)’라고 통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사, 심리계열의 전문직(정신분석가,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 교육계열의 전문직(교사 등), 의료전문직(약사,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 그리고 인권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등이다(도날드 쉰 2019, 매들린 번팅 2022, 토마스 M. 스크홀트 2003).

이들은 인간을 상대할 때 전적으로 그 사람의 개별성에 주목한다.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어떻게 인간/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그 삶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들의 정서적 바탕에는 연민이 있다. 연민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처지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적 인간으로 보려는 태도이다. 이들의 윤리의식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고 갱신된다. 이들은 인간 가까이에서 접촉하며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려는 시도이다. “왜 당신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데, 기계와 일을 합니까?” 이런 질문에서 이들은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찾는다. 이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돌보는 것을 임무로 여긴다. 이 과정에서 모호함, 상반된 인간의 욕망과 모순되고 복잡다단한 심리로부터 받는 어려움, 감정적인 혼란 등을 겪는다. 다른 사람의 체험에 정서적으로 관계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풍요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직업수행상의 어려움에 대처한다. 이들은 인간을 돌보는

것을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그런 사회적 대우를 받을 때, 자신이 존엄한 존재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붕괴될 경우 존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정혜신 2018, 마이클 화이트 2014, 마셜 B. 로젠버그 2017, 매들린 번팅 2022, 어빙 세이드만 2009, 로버트 콜스 1989, 토마스 M. 스크 홀트 2003).

그렇다면, 기록학 종사자들은 이들과 어떤 접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공통기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려면 정서적, 언어적 공통기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통기반은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활동기반이 된다. 구술은 인류학의 방법론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인류학을 넘어 폭넓게 사용된다. 기록학도 이런 추세에 합류했다. 여기서 구술이 전개될 수 있었던 공통기반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지역’이라는 공통기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역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진입장벽 없이 들어가 협업할 수 있는 활동기반이었다. 상이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었던 조건도 ‘지역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지역은 특정인이나 특정분야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관리하는 공동소유가 된다. 지역이라는 공통기반의 공동소유 형태는 상이한 분야의 협업이 진전될수록 확대되고 단단해진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수행하려면 다른 분야와 협업이 필요하다. 전망에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개념은 다음의 두 개이다. 첫째, ‘현장’ 개념이다. 그간 기록학의 기반을 넓혔던 ‘시설’과 ‘지역’을, 이제부터는 보다 넓은 의미를 지닐 현장으로 확대해서 접근해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이 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고 있고,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에 대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보다는 현장이 더 적합할 것이다.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은 경기도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지역의 일이라고 보긴 힘들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의료현장’이다. 기본권에 필요한 사회제도(의료, 복지, 재활, 교육, 심리 등)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역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현장으로 의미를 확대해서 봐야 한다. 기록학은 이렇게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보다 넓은 기반에서 갱신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기록관리 시설도, 기록활동이 전개되었던 지역도 기록현장의 일부가 된다.

둘째, ‘실무자’(practitioner) 개념이다. ‘실무자’는 전문지식과 책임윤리를 갖추고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책임윤리는 직무수행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결과에 따르는 것들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실무자가 뭔가를 할 때 비로소 특정한 형태를 갖춘 일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일은 실무자가 발단이고 이들을 경유할 때 실무자에 의해 조작되며 전개된다. 이들은 일을 반복하면서 관행과 경험을 만든다.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것, 적정한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관행적으로 일하면서도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일의 전개를 ‘실천한다, 활동한다, 개선한다’의 이미지로 이해한다(한기철 2011, 도날드 쉰 2019, 존 듀이 1997, 토마스 M. 스크홀트 2003). 실무자는 일하는 단위이다. 개인일 수 있고, 팀일 수 있다. 일하는 단위인 실무자를 투명하게 통과하여 저 편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은 논리상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관리에서 실무자는 관료제도의 계급관계(관리자-실무자)에서 이해된다. 실무자는 관리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실무역량으로 좁혀지는 것이다. 이처럼 실무자라는 말이 주는 관행적 인식이 분명히 있어서 ‘실무자라는 기존의 개념’을 사용해서 새로운 논의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번역에 주목해본다: ‘지역사회 실무자를 위한 접근법’(An Approach for Community Practitioners). 관행적으로 쓰이던 일상어들도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은 개념어로

전개되곤 한다. 예를 들어, 기록학이 등장한 이래로 기록은 일상적인 말에서 기록학이라는 분야를 떠받치는 개념어가 되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기록을 자기 방식으로 편의적으로 쓰려고 하는 데에 비해, 기록학은 엄밀한 규정으로 정의하여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기록하는 일을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록관리직, 기록연구사, 기록전문가, 기록활동가, 아키비스트 등이 있다. 이런 명칭은 특정 분야에 속한 법률적 인간을 지칭한다. 물론 다른 분야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이 있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불리며 직역간의 구분이 엄격하다. 그런데 이들이 ‘국경없는 의사회’에 합류해서 재난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자리를 옮겨 의료상의 기능이 된다. 이들은 모두 ‘구호활동가’로 불린다. 이들은 물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능으로 일한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평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의사는 재난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데에 참여해서, 여전히 망가진 뼈를 재건하는 수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의사를 구호활동가의 일부로 이해한다. 기능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외과의사는 여전히 메스를 들고 수술한다. 오히려 긴박한 상황이니만큼 전문성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댄 보르롤로터 2013, 엘리엇 네이턴 2003, <https://msf.or.kr>). 다만, 이들은 특정 병원에 속해서 일할 때와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병리적 질서의 질병보다는,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을 보면서 연민의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헌법적 질서에서 기록하는 일은 단순할 수 있다. ‘어떤 이유이든 기록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전문성과 책임윤리를 갖춘 실무자로 일하면서’ 다른 직업군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이 기록하는 일이다.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기록실천으로 강화될 수 있다. 기록

학은 귀납적 성격의 학문이다. 현장과 경험을 기반으로 여기에서 전개되는 것들을 쌓아 올려 형성되는 것들을 학문의 구성요소로 삼는다. 현장과 실무자의 실천경험이 쌓이는 시간은 기록학의 지평도 넓어지는 시간이다. 각도를 틀어 관점만 조금 달리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한다.

4. 새로운 기록규칙

1) 기록관리 규칙과 새로운 기록규칙

규칙은 통상 어떤 일이나 현상에 일정하게 나타나는 질서를 말한다. 또는 사물이나 현상이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존재하거나 변화하는 데에 관여하는 질서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음운 현상에는 다른 언어의 음운현상과는 다른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규율, 규약, 규범, 법칙, 원칙 등도 상황에 따라 규칙의 의미로 쓰인다. 그런데 이런 정의로만 규칙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규칙의 이미지를 역동적인 한 장면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별판을 가로지는 개미들의 대규모 이동 장면이나 태평양을 횡단하는 철새들의 질서정연한 이동 장면 같은 것. 기록현장에서 기록하는 일에 적용되는 기록규칙을 말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장면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칙의 구체적 이미지를 잡기 위해 축구라는 역동적 스포츠의 규칙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해본다.

축구의 규칙은 ‘상대편 골대 안으로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것’이다. 이 단순한 규칙이 선수, 심판, 스태프, 관중들을 질서정연하게 흥분시킨다. 몇 만 명이,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몇 억 명의 사람들이 ‘골을 넣어야 이긴다’는 단순한 규칙을 공유하며 축구장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 움직임, 환호와 열정이 일사불란하게 축구공을 따라다

니며 거대한 역동을 만든다. 세계 곳곳에서 매일 규칙이 반복된다. 단순한 규칙의 반복적 실행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인간의 삶에서 축구 같은 스포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다. 미디어는 이런 사건을 보도한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억 안에 사건을 넣는다. 그런데 기록에는 이런 규칙이 없을까.

이 글은 기록에 관한 말과 행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담론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어수선하거나 무질서하지는 않다. 각자의 기록현장에서 다른 기록현장을 의식하지 않고 기록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기록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기록규칙은 기록관리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주었던, '기록관리 규칙'과는 다르다. 기록활동, 탈시설적 기록실천, 기록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록규칙을 논의해야 한다. 먼저 그동안 기록관리를 질서정연하게 반복해주었던 기록관리 규칙에 대해 서술하고 나서, 새롭게 논의할 기록규칙에 대해 살펴본다.

기록관리에도 단순한 하나의 규칙이 있다. 그것은 '기록을 보존하고 서비스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 기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정의하는 일, 기록의 생산과정을 통제하는 일, 가치 있는 기록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일, 아카이브 건물을 세우고 보존서고를 드나드는 일, 꽤 많은 사람들이 아카이브를 오가는 일, 사람들을 아카이브로 끌어당기려고 전시를 구성하는 일, 심지어 인근 주민들이 아카이브 건물 주변을 일없이 산책하는 일(서비스 개념이 없다면 아카이브 산책은 불가능하다). 이런 일들은 기록관리 규칙의 반복적 실행이다. 규칙의 반복적 실행에서 사건이 발생한다. 문서는 사건을 기록한다. 사람들은 기록사건을 기억 안에 넣는다. 규칙의 반복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기록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준다(임지훈 2017, 2019).

그러나 새로운 기록실천(기록활동과 탈시설적 기록실천)이 관행적 기

록실천(기록관리)의 규칙을 반복적으로 실행한다고 보긴 힘들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구술작업이 진행될 때, 여기에 참여하는 한 지역주민이 ‘나는 우리 사회의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구술에 응하고 있으며 나의 구술기록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서비스를 되기를 바란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견 뭔가 어색하다. 물론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술할 때 이런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기록관리기관의 기록관리이다. 그렇다면, 기록을 기억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구술한다는 말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떤 맥락일까. 또한 구술기록으로 정리된 기억이 책이나 아카이브 같은 매체를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서비스가 된다면, 이때의 서비스는 아카이브 전시장의 서비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서 단초를 찾아본다.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보존한다. 나이가 들어 기억을 상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매일 공원에 나가 운동을 하던 일상의 반복이 힘들어 진다. 또한 그 사람이 평생 살아왔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의 상호관계는 흐릿해지고,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나오는 슬픈 일방적 관계가 새롭게 전개된다. 만약 부모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이런 일방적 관계마저 단절이 된다. 기억을 보존하는 것은 삶을 보존하는 것이고,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기억을 서비스한다는 말은 성립되기 힘들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보존은 아카이브의 보존서고에서 반복되는 보존, 전시장에서 반복되는 서비스와는 다르다. 사물인 기록을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규칙을 생명인 인간의 기억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보존과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기록규칙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

요가 있겠다. 농부들이 씨앗을 보존하는 방법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농부들은 매년 그 해의 가장 좋은 씨앗을 받는다. 이 씨앗을 이듬해 땅에 뿌려 또 농사를 지은 다음에, 또다시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씨앗을 받아 그 다음해 농사에 대비한다. 겉으로만 보면 씨앗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씨앗은 변화를 보존한다. 씨앗은 자신이 살아야 할 곳에서 한 해를 살면서 대기와 기후의 변화, 토양의 변화를 수용하며 생명체로 살다가, 그 정수를 이듬해 새로운 씨앗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인간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겪으며 나아가는 일이, 결국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정수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갈등하면서 타인에게서 오는 이질적인 것들을 수용하게 된다. 생명체는 자기 외부의 이질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삶의 정수는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헌법적 관점에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어렸을 적,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어린 시절이 행복했었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 반대라면 불행했었다고 말할 것이다. 불행은,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못했다는 갈등에서 발생하는 차이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인간답게 살면서 행복을 향유하고자 하나,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갈등에서 인간은 불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에서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정의도 여기에 따른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삶에서 헌법적 질서인 인간의 기본권을 매일 반복하며 사는 것이다. 기록하는 일이 여기에 복무하다면, 기록규칙도 달라진다.

기록규칙은 다음과 같다.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사회적 상황마다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제도와 정책을 통해 증식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에 합류하는 것이다. 헌법적 질서에서 전개되는 기록 활동, 탈시설적 기록실천, 기록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록 규칙이지 않을까 한다.

기록활동이나 탈시설적 기록실천과 달리, 기록관리는 기록을 관리하는 영역이니만큼, 인간의 기본권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인권의 시선으로 기록관리에 접근해야 한다는 ICA 선언을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ICA는 2016년에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ICA가 1996년에 채택한 아키비스트 윤리강령(Code of Ethics)과 유네스코가 2011년에 채택한 세계기록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을 잇고 있다. 이런 일련의 선언들은 기록을 보존하고 서비스하는 기록관리 규칙을 배제하자는 선언이 아니다. 정반대가 아닐까 한다. 기록관리에 직업윤리, 인권의식이 들어갈 경우, 본래의 규칙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일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기록은 인권이라는 목적에 유용한 존재이다.” 돌이켜보면, 단순한 이 문장 하나를 한국의 기록관리 시설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기록관리의 외관상의 특징은 그대로라고 해도, 일의 전개와 지향에 있어 달라질 성격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기록관리는 새로운 기록규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기록학의 새로운 계열로 삼을 수 있다.

2) 기록규칙의 반복적 실행

호스피스 병동에서 발생한 한 기록장면을 새로운 기록규칙의 반복적

실행으로 말해본다. 20대 초반의 여성이 말기 암환자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 말고 의료진이 할 수 있는 것은 달리 없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통제를 투여하는 한편,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에게 사진기를 선물했다. 사진을 좀 찍어보면 어떻겠느냐는 말과 함께. 사진기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 아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뭔가를 ‘인간적으로’ 선물하는 것도 의료 프로토콜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한 의사의 특이한 행동으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생애에 진통제와 사진기의 기묘한 공존이 발생했다. 환자는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사진을 찍고 다니며 기쁨을 활개를 쳤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을 찍었고, 병동의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도 찍었다. 그리고는 사진을 인화해(의료진의 협조) 사람들에게 선물했다. 카메라 앵글 안 피사체들에게, 같은 운명 앞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료 환자들에게 그들이 보존하고 있던 아름다움을 선물했다.

그 순간은 연민의 순간이었다. 자신을 동정하고 한탄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 젊은 여성은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죽음과 몇 번씩 옮겨야 했던 위탁 가정, 길거리 청소녀, 소년원 수감자 등의 거칠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그녀 인생에 존엄성은 자리 잡지 못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다정한 보살핌에서 나오는 존엄성의 느낌, 성장기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우애를 다지는 순간에 갖게 되는 존엄성의 느낌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관계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인생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나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기록하는 일은 취약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온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일이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의료진)

의 책임 있는 태도에서 오는 안정감, 같은 처지에서도 서로를 염려하고 보살피는 연민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다. 여기에 기록하는 일이 가세했다. 사람들을 앵글 안의 피사체로 앉히고, 어떨 때는 몰래 관찰하며 찍고, 그것을 인화해서 선물하고, 다정하게 서로 웃고, 우애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일이 기록하는 일이 되었다. 이 여성에게 기록은 말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자신의 존재를 정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인간과 인간의 다정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주변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아온 고단한 인생 앞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죽음 앞에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에 말하기 위해, 그녀는 기록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록하는 일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일이었다. 여기에 전문직 기록자, 인권과 기록을 섞어짓기 하는 인권기록자, 또는 인근의 공공아카이브와의 협업은 없었다. 만약 협업이 있었다면 구술, 쓰기, 출판, 전시 등의 여러 기록방법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늘면서 병동 전체가 특이하고도 독특한 기록현장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의료진이 단독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의사는 의료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리고 한계를 인정한 곳에 기록을 놓아두었다. 의료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이번 경우의 의료는 기록과 협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의학적 사건이 되었다. 그리고 의학적 사건은 기록학적 사건으로도 넘어왔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록은 의료가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 기록규칙이 반복적으로 실행되었다.

세상에서 벌어질 무수한 기록장면 중에서 한 장면만을 말했다. 사실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 인간(&죽음)을 상대로 하는 분야에서 기록이 말해야 할 무언가로 등장하는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 바깥은, 마을/지역/단체(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있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결사체)/개인/가족/일상/사회적 사건(예. 4·16 사건) 등이었다. 그러나 의료, 심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다루는 직업군에서도 기록하는 일이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4장의 끝에서 말하게 되었다. 기록관리의 앵글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기록현상은 발생했다가 사라지곤 한다. 기록에 관한 말과 이런 말을 내세운 행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록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해야 할 무언가가 되었다.

5. 결론

기록학도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이다. 유기체는 환경과 교류하면서 생존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고 생명활동을 한다. 기록학도 사회적 환경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며 성장해야 한다. 이것은 기록학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록관리의 시설과 기술적 방법, 언어, 인적 구성도 변했다. 따라서 기록학의 구성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있다. 디지털 전환은 가시적인 변화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 검토한 변화인 인간, 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변화 :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는 비가시적인 변화이다. 비가시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질적 변화를 말한다. 비가시적인 것들은 몸으로 겪을 때 그 실상을 알게 된다.

기록관리는 관리의 영역이다. 그러나 기록을 관리의 영역으로만 간

주한다면 기록학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고 사회 전반에 작용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인간에게 기록이란 무엇인지 묻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기록학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통상 기록관리 시설의 방문자 현황, 콘텐츠 이용자 현황 등 통계상의 존재로 이해된다. 또는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기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없는가. 기록학에는 다른 개념의 인간은 없을까. 이 글이 본문에서 물었던 질문이다. 기록학은 헌법적 질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야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헌법적 질서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을 가진 존재이다. 상거래 행위를 위해 시장에서 만나는 것처럼, 기록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헌법적 질서에서 만날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새삼스럽게 질문하게 될 때는, 그 아래에 규범의 변화가 있을 때이다. 그전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회구성원들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새삼스러운 의문을 갖게 된다. 사람들은 관계성이 취약한 사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자구적 노력과 집단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과정을 이 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증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사회적 과정/변화와 맞물려 기록도 변화한다. 기록은 이제 대중적으로 담론의 양상을 띠면서 ‘해야 할 일, 동시에 말해야 할 무언가’가 되고 있다. 기록은 사회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언어가 되고 있다. 기록학은 우리 사회에서 기록을 책임지는 분야이다. 기록을 언어로 사용하는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기록학은 여기에 언어적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일이다. 헌법적 관점에 서야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11), 일상이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29.
- 김두식 (2011), 헌법의 풍경, 서울: 교양인.
- 김신석 (2017), 사회적 사건 기록화를 위한 기록개념의 재해석 : 416가족협의회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 김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밀양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Vol.0 No.44.
- 김영란 (2020),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서울: 풀빛.
- 김정인 (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서울: 책과 함께.
- 김정인 (2017),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서울: 책과 함께.
- 박소진 (2021), 시니어 인지건강을 위한 사진 아카이브 플랫폼 구상, 한국외대 석사논문.
- 배은희, 설문원 (2023), 시민의 '기록자로서의 당사자성' 획득 과정 : 완월동 시민아키비스트 기록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23 No.1.
- 설문원 (2021), 기억의 기록학적 의미와 실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67.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65.
- 손동유 (2021),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69.
- 신유립 (2019), 증평군 기록관은 증평을 닦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 19 No1.
- 이경남. 이현정 (2020), 서사 기반 수집 실행지침의 설계와 개발절차: 서울기록원의 S-NAP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65.
- 이경래 (2022), 정동의 기록화: '4·16 기억저장소'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79.
- 이경래 (2021), 인류세 시대 '생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68.
- 이도순 (2023), 기록자치 실현을 위한 기록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No.16.
- 이연창 (2021), 관계형 아카이브의 환경모형,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69.
- 이연창 (2022), 관계형 아카이브의 플랫폼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 이영남 (2019),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59.
- 이영남 외 (2018),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수원: 더페이퍼.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42.
- 임지훈 외 (2017), 사건 아카이브의 시론적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51.
- 임지훈 (2019), 사건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논문.
- 조민지,이은화,이영남 (2020), 관계성 기반 기록정보서비스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No 66.
- 정지연 (2023), 애도의 아카이브 연구, 한신대 석사논문.
- 정혜신 (2018), 당신이 옳다, 서울: 해냄.
- 차병직,윤재왕,윤지영 (2016), 지금 다시, 헌법, 서울: 위즈덤하우스.
- 차성환 (1990), 19세기 방법론 논쟁과 막스 베버 현실탐구과학론, 현상과 인식, Vol.13, No.4.
- 청와대 (2018),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서울: 더휴먼.
- 한기철 (2011), 프랙티스: 허스트 교육이론의 재조명,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Vol.24 No.2.
- 한인섭 (2019), 100년의 역사, 서울: 푸른역사.
- 홍기빈 (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 홍기빈 (2023), 어나더 경제사1: 자본주의, 서울: 시월.
- Bunting, Madeleine (2020), Labours of love, The fortune(김승진, 2022, 사랑의 노동, 서울: 반비).
- Bortolotti, Dan (2010), Hope in Hell: Inside the World of Doctors Without Borders, Firefly Books Ltd(고은영, 정경옥, 2013, 인류의 절망을 치료하는 사람들: 국경없는의사회 사람들의 생생한 현장, 씨앗을뿌리는사람).
- Carr, Edward Hallett (2002), What is History?, Palgrave Macmillan(김택현, 2015,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 Coles, Robert (1989), The Call of Stories, Houghton Mifflin Company.
- Dewey, John (1997), Experience And Education, Free Press(엄태동, 2019, 존 듀이의 경험과 교육, 박영스토리).
- Foucault, Michel (1969), L'archeologie du savoir, Gallimard(이정우, 2000,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 Foucault, Michel (1970), L'ordre du discours: Lecon inaugurale au College de France prononcee, Gallimard(허경, 2020, 담론의 질서, 세창출판사).
- Hoggard, Liz (2005), How to be Happy: Lessons from Making Slough Happy, BBC Books(이경아, 2006, 행복, 예담).

- Gros, Frédéric (1996), Michel Foucault, Humensis(배세진, 2022, 미셸 푸코, 이학사).
- Jenkins, Keith (1991), Rethinking History, Taylor & Francis(최용찬,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 Morley, David (1998), Healing Our World: Inside Doctors Without Borders in a Third World Crisis, McClelland & Stewart, Toronto(조준일, 2007, 국경없는 의사회, 파라복스).
- Rosenberg, Marshall B. (2015),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Life-Changing Tools for Healthy Relationships, Puddle Dancer Pr(캐서린 한, 2017, 비폭력대화, 한국NVC출판사).
- Schon, Donald (1984),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배을규, 2018, 전문가의 조건: 기술적 숙련가에서 성찰적 실천가로).
- Seidman, Irving (2019),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Teachers College Press (박혜준 외, 2022,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면담, 학지사).
- Sen, Amartya (2001),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김월기, 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 Singer, Peter (1997), How are We to Live? : Ethics in an Age of Self-Interest (Paperback) Oxford Univ Pr(황경식 외, 2013, 실천윤리학, 연암서가).
- Singer, Peter (2011), Practical Ethics, Cambridge Univ Pr(노승영, 2023,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시대의 창).
- Skovholt, Thomas M. (2011), The Resilient Practitioner :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Routledge(유성경, 2003,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학지사).
- White, Michael (2011년), Narrative Practice: Continuing The Conversations, W. W. Norton & Company(김유숙 외, 2014, 내러티브 실천, 학지사).